정형화(표준)사양서



제작사양서

1) 보조화의 외형피혁은 갑피(FG)로 제작 하여야 한다.
2) 보조화의 내형피혁은 육성내피 및 잠바지로 제작 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상이처에 따라 보조화의 형을 변경 제작시 콜크 및 EVA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보조화의 굽높이는 2cm ~ 3.5cm 이어야 한다.
5) 보조화 뒷축 높이는 13cm 이상 이어야 한다.
6) 보조화 디자인은 4가지(끈식, 쟈크식, 벨크로식, 슬립식)이상으로 변형될 수 있다.
7) 보조화 창소재를 4가지(고무창, 우레탄창, 스폰지창, 등산화창) 이상으로 한다.
8) 제품결합(재질불량, 제작불량)이 발생시는 그 정도에 따라 수리 또는 재 제작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9) 보조화 중창은 보강된 조립중창을 사용 하여야 한다.
10) 보조화는 계약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수제화이여야 한다.

정형화(특수)사양서



제작사양서

1) 보조화의 외형피혁은 갑피(FG)로 제작 하여야 한다.
2) 보조화의 내형피혁은 육성내피 및 잠바지로 제작 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상이처에 따라 보조화의 형을 변경 제작시 콜크 및 EVA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보조화의 굽높이는 2cm ~ 3.5cm 이어야 한다.
5) 보조화 뒷축 높이는 8cm 이상 이어야 한다.
6) 보조화 디자인은 4가지(끈식, 쟈크식, 벨크로식, 슬립식)이상으로 변형될 수 있다.
7) 보조화 창소재를 4가지(고무창, 우레탄창, 스폰지창, 등산화창) 이상으로 한다.
8) 바닥 창 부위 또는 중창 안쪽은 1cm이상 높임 제작하는 경우는 정형화(특수)로 한다.
9) 제품결합(재질불량, 제작불량)이 발생시는 그 정도에 따라 수리 또는 재 제작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10) 보조화 중창은 보강된 조립중창을 사용 하여야 한다.
11) 보조화는 계약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수제화이여야 한다.

장화(표준)사양서



제작사양서

1) 보조화의 외형피혁은 갑피(FG)로 제작 하여야 한다.
2) 보조화의 내형피혁은 육성내피 및 잠바지로 제작 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상이처에 따라 보조화의 형을 변경 제작시 콜크 및 EVA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보조화의 굽높이는 2cm ~ 3.5cm 이어야 한다.
5) 보조화 뒷축 높이는 13cm 이상 이어야 한다.
6) 보조화 디자인은 4가지(끈식, 쟈크식, 벨크로식, 슬립식)이상으로 변형될 수 있다.
7) 보조화 창소재를 4가지(고무창, 우레탄창, 스폰지창, 등산화창) 이상으로 한다.
8) 제품결합(재질불량, 제작불량)이 발생시는 그 정도에 따라 수리 또는 재 제작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9) 보조화 중창은 보강된 조립중창을 사용 하여야 한다.
10) 보조화는 계약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수제화이여야 한다.

장화(특수)사양서



제작사양서

1) 보조화의 외형피혁은 갑피(FG)로 제작 하여야 한다.
2) 보조화의 내형피혁은 육성내피 및 잠바지로 제작 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상이처에 따라 보조화의 형을 변경 제작시 콜크 및 EVA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보조화의 굽높이는 2cm ~ 3.5cm 이어야 한다.
5) 보조화의 뒷축 높이는 13cm 이상 이어야 한다.
6) 보조화 디자인은 4가지(끈식, 쟈크식, 벨크로식, 슬립식)이상으로 변형될 수 있다.
7) 바닥창 부위 또는 중창 안쪽으로 1cm이상 높임 제작하는 경우는 장화(특수)로 한다.
8) 보조화 창소재를 4가지(고무창, 우레탄창, 스폰지창, 등산화창) 이상으로 한다.
9) 제품결합(재질불량, 제작불량)이 발생시는 그 정도에 따라 수리 또는 재 제작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10) 보조화 중창은 보강된 조립중창을 사용 하여야 한다.
11) 보조화는 계약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수제화이여야 한다.

단화(표준)사양서



제작사양서

1) 보조화의 외형피혁은 갑피(FG)로 제작 하여야 한다.
2) 보조화의 내형피혁은 육성내피 및 잠바지로 제작 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상이처에 따라 보조화의 형을 변경 제작시 콜크 및 EVA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보조화의 굽높이는 2cm ~ 3.5cm 이어야 한다.
5) 보조화 디자인은 4가지(끈식, 쟈크식, 벨크로식, 슬립식)이상으로 변형될 수 있다.
6) 보조화 창소재를 4가지(고무창, 우레탄창, 스폰지창, 등산화창) 이상으로 한다.
7) 제품결합(재질불량, 제작불량)이 발생시는 그 정도에 따라 수리 또는 재 제작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8) 보조화 중창은 보강된 조립중창을 사용 하여야 한다.
9) 보조화는 계약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수제화이여야 한다.

단화(특수)사양서



제작사양서

1) 보조화의 외형피혁은 갑피(FG)로 제작 하여야 한다.
2) 보조화의 내형피혁은 육성내피 및 잠바지로 제작 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상이처에 따라 보조화의 형을 변경 제작시 콜크 및 EVA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보조화의 굽높이는 2cm ~ 3.5cm 이어야 한다.
5) 보조화 디자인은 4가지(끈식, 쟈크식, 벨크로식, 슬립식)이상으로 변형될 수 있다.
6) 보조화 창소재를 4가지(고무창, 우레탄창, 스폰지창, 등산화창) 이상으로 한다.
7) 바닥 창 부위 또는 중창 안쪽은 1cm이상 높임 제작하는 경우는 단화(특수)로 한다.
8) 제품결합(재질불량, 제작불량)이 발생시는 그 정도에 따라 수리 또는 재 제작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9) 보조화 중창은 보강된 조립중창을 사용 하여야 한다.
10) 보조화는 계약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수제화이여야 한다.